

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2. . .
발 의 자	이선우 의원 외 4명

구미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이선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2. . .

발 의 자 : 이선우 · 김재우 · 송용자 · 이지연
최경동 의원(5인)

1. 제안이유

어린이 놀이기구의 시설 점검·개선에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고 실제 사용자의 의견을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표지판 설치에 대한 사항(안 제5조)
- 나. 안전의무 이행에 대한 사항(안 제6조)
- 다. 안전감시망 구축에 대한 사항(안 제8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」 제2조의2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다. 기 타 : 해당 사항 없음

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한다.”를 “하며,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에 본조 제1호의 금지 행위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한다.”로 한다.

제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학교,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, 아동 관련 법인, 관련 부서 등을 통해 년 1회 이상 아동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간담회를 시행하여야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안전지킴이”를 “안전지킴이(이하 지킴이)”를 20명 이내”로, “있다.”를 “있고, 지킴이 위촉 시 아동을 3분의 1이상 포함시켜야 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행위의 제한)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,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	제5조(행위의 제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하며, 모든 어린이놀이기구에 본조 제1호의 금지 행위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한다.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제6조(안전의무 이행) ① ~ ⑤ (생략) <u><신설></u>	제6조(안전의무 이행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안전점점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학교,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, 아동관련 법인, 관련 부서 등을 통해 년 1회 이상 아동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간담회를 시행하여야 한다.
제8조(안전감시망 구축)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“어린이놀이기구 안전지킴이”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.	제8조(안전감시망 구축) ① ----- ----- ----- 안전지킴이(이하 지킴이)”를 20명 이내----- 있고, 지킴이 위촉 시 아동을 3분의 1이상 포함시켜야 한다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

□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
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위험
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구미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표지판 설치에 대한 사항(안 제5조)
- 안전점검 관련 간담회 시행에 대한 사항(안 제6조제6항)
- 안전감시망 구축에 대한 사항(안 제8조제1항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에 해당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표지판 설치를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나 표지판이 미 설치된 시설을 조사하여 개소수 파악을 완료하여야 기술적으로 정확한 추계가 가능함.(안 제5조)
- 안전점검 관련 간담회 시행에 따라 참석수당 등 예산의 소요가 예상되나 추후 세부계획 수립에 따라 비용 산출이 가능하며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.(안 제6조제6항)
- 안전지킴이 자원봉사 활동실비 등으로 세출예산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.(제8조제1항)
 - 산출내역(안)

(단위 : 원)

내 용	산출내역	금액
자원봉사 활동실비	12,000원×20명	240,000

4. 작성자

- 안전재난과 사회재난계 이소정 (054-480-6740)